

불인정·조정 사유별 소명요령

불인정 사유	소 명 요 령
공사내역 확인요망	세부공종이 포함된 공사내역서 제출 ※ 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영역에 해당되는 공사로 확인될 경우 실적인정 처리하며 건설공사가 아니거나 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영역에서 제외되는 공사는 실적인정 불가
○ 시설물의 신축공사 실적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영역에서 제외됨으로 실적인정 불가. ○ 안전진단용역, 설계용역, 청소용역, 단순철거용역, 폐기물처리비용, 물품구매납품 등의 매출은 건설공사가 아님으로 실적에서 제외됨.	
실적증명서 없음	발주자(원도급자)가 확인한 실적증명서원본 제출 ※ 관급공사(국가·지방자치단체·정부투자기관 등) 원도급인 경우에는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실적증명서 제출 ※ 민간공사 중 3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실적증명서 제출해야 하며 계산서사본은 실적인정 불가
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해당매출없음	- 실적증명사업자와 매출계산서발행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사본 등 증빙자료 제출 - 2014년도 준공완료하였으나 신고한 전체매출이 2015년도 1/4 분기에 발생한 경우에는 2015년도 1/4분기 합계표 제출와 해당 계산서 사본제출
계약서 없음	2015년도에 계약만 이루어지고 기성이 미발생한 공사건 신고 시에는 증빙서류로 계약서 사본 제출
동일업종하도급 발주자 서면승낙서 미제출	발주자가 확인한 동일업종간하도급 서면승낙서사본 제출 ※ 동일업종간하도급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확인한 서면승낙서 미제출시 원·하도급 실적 모두 불인정 처리됨. ※ 동일업종하도급 서면승낙서를 제출한 원도급 업체는 하도급 준 금액의 1/2만큼 감액되어 실적인정되므로 기성금액 확인 요망.
동일업종간하도급내역 미신고	
원도급사에서 동일업종간하도급내역 미신고	

조정 사유	소 명 요 령
해당매출 부족하여 감액	신고한 기성액보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금액이 적을 경우 감액 - 2014년도 준공완료하였으나 신고한 전체매출이 2015년도 1/4 분기에 발생한 경우에는 2015년도 1/4분기 합계표와 감액된 금액에 해당되는 계산서 사본제출
동일업종하도급 기성감액	원도급 기성액에서 하도급금액의 1/2만큼 감액하지 않고 신고하였을 경우 하도급자의 기성금액을 확인하여 협회에서 감액 ※ 감액된 기성액이 잘못되었을 경우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 제출